

[파일삭제] 퇴직자가 회사의 업무용 파일 무단 삭제 + 퇴직자 고의 없음 주장 불인정 -

업무방해죄 책임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형사 고소한 퇴직자의 주장 - 실수로 파일삭제, 고의 없음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직 즈음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있던 자신의 개인파일을 지우려던 중 실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의 운영과 관련된 위 폴더와 파일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까지 삭제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업무가 방해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 3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파일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들로서, 피고인은 임의로 이를 삭제할 권한이 없었던 점(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36쪽),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후인 같은 달 5.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혼자 있는 틈을 타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측에 그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점, ③ 삭제된 이 사건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여행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이 관리하던 여행상품 정보, 업무정보 등으로서, 그로 인해 이 사건 파일의 복구 시까지 수일간 피해자 회사의 상품광고 등 영업활동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파일들을 지우기 위해 폴더를 드래그하던 중 실수로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폴더나 파일만을 골라서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거나 당시의 여건상 곤란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 삭제 후 다시 컴퓨터 내 휴지통에서 이를 영구 삭제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파일의 삭제 경위 및 그 범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후 복구된 파일 중 '버스뮤직' 파일 외에는 피고인이 삭제하였다는 개인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상태를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3273 판결

민형사소송, 파일삭제, 업무방해, 기술법무, 저작권, 영업비밀, 계약분쟁, 손해배상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